

1.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해 4월 4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범부처적인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주유소의 상표표시제 시행방안

하였다. 이는 최근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 및 제조업 투자부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기업의 육성을 진작시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경제행정규제가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6, 70년대의 경제개발단계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과당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정부규제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민간경제 활동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부규제와 개입이 축소되면 많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유통구조도 단순화되며, 기업 간의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가격하락과 품질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증대될뿐 아니라 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난 '90년 5월 31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석유산업 등 21개산업을 규제완화 대상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있어서 신규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거나 판매지역이 제한되어 경쟁촉진을 제약하는 등의 각종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陳泳坤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서기관 대우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규제완화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21개 대상산업중 주류, 해운산업등 18개산업의 규제완화 추진방안이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주류산업의 예를 들면 특정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지방업체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76년부터 15년 동안이나 시행되어오던 자도소주 판매제도(주류도매상으로 하여금 해당 시·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일정량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임)가 '91년말에는 폐지되고 소주용 주정배정 제도도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제까지 동결되어오던 주류 제조 신규면허도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석유산업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동자부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완화방안 수립작업을 진행하여 오년중 작년 8월초 발발한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의 가격 및 수급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페르시아만사태가 진정되어 유가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본격적인 규제 완화의 추진작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록 석유산업의 전반에 걸친 정부규제완화는 페르시아만사태라는 외부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원유가격 및 수급의 불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현행 법령 및 제도의 태두리내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되었으며 그러한 대상이 바로 주유소의 상표표시제(Pole Sign)라 하겠다.

2. 상표표시제의 개념 및 기대효과

상표표시제란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 거의 모든 주유소가 하는 것처럼 특정 정유사의 Pole을 설치하거나 벽면, 주유기등에 특정 정유사의 표시광고를 한다면 해당 정유사 제품외의 타사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중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상표 표시제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특정 정유사를 선택하여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업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Pole을 설치하고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하거나 정유사의 Pole 또는 표시, 광고가 없이 독자적인 상표를 표시·광고하고 여러 회사의 제품을 임의로 판매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상표표시제를 반드시 단일정유사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제한적으로 시행할 경우 석유 유통시장의 계열화에 따른 주요소관리체계의 개선, 유통비용 경감 및 품질보증 책임의 명확화등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을 것이나 반면 정유사에 의한 유통망의 장악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고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의 단점도 예상된다. 또한 아무리 석유산업의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정유사와 판매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단일업체와만 배타적으로 거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이다. 다소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해서 거래관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완화의 취지에도 역행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당초 동자부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코자 하였던 상표표시제의 실시근거 규정은 관계부처간의 법령협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이것이 상표표시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정부는 정유사와 판매업자간의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자보호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상표표시제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표시·광고된 제품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상표표시제의 시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우선 첫째로 소비자보호 측면이다. 현재와 같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유소에서 표시·광고된 상표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설혹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사

제품에 대한 선호 또는 제품의 특성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석유제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소비자들만이라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여 믿고 구입한 제품이 실상은 당해 제품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는 정유사간의 경쟁촉진 효과이다. 상표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표시·광고된 제품과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이 일치되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야만 정유사간 품질경쟁 노력이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상표표시제가 정착되어 정유사 브랜드 판매가 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될 경우 정유사간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품질유지 및 정량거래등 소비자보호 책임의 명확화와 정유사에 의한 경영지도 등을 통한 주유소 경영체계의 근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표표시제의 시행방안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상표표시제는 이제까지 없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상표표시제는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단일 정유사를 선택하여 그 정유사로부터만 제품공급을 받고 당해 제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 또는 광고하였을 경우 그 정유사가 공급하는 제품만 판매토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설한다는가 제도의 변경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류제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비록 일부이지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석유류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동자부와 협조하여 상표표시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유사 및 관련업계등에 통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석유산업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얹혀있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유보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상표표시제 시행에 대한 사전홍보 및 업계의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상표표시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하여는 법규에 의한 단속 보다는 관련업계 스스로가 공정경쟁을 이루려는 노력에 의한 자율적 정착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주유소 등의 상표표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석유판매업의 허가제 실시에 따라 주유소간의 거리제한 등 주유소 신설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경쟁의 심화로 주유소의 입장에서는 할인판매 및 외상판매등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정유사로 제품구입선을 수시로 바꾸는 복수거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석유정제업의 허가제에 따른 첨입제한 및 석유류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의 실시등으로 정유사간 품질 및 가격경쟁 유인이 미흡하여 제품간 특성차이가 크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정유사간에 제품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상표표시제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왔다. 보다 원천적으로는 타공신품과 달리 석유류제품의 경우 일반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의 식별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석유류제품에 대한 상표표시제를 협행 공정거래법의 테두리내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시행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무리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석유판매업에 대한 허가제를 완화하여 신규참입을 확대하고 3. 14 조정명령을 폐지하여 정유사의 석유유통부문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여 석유유통부문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직거래 허용과 석유류제품 가격의 자율화도 이루어져 석유산업이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를 갖출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의 효율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정부규제완화(deregulation) 또는 규제개선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데는 정부나 민간부문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제약하는 요인이 적지 않다.

첫째, 많은 경우에 있어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자가 숫자으로는 많더라도 개선에 따른 이익이 개개인별로는 그리 크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계량화되기 어려우므로 수혜자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을 집약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보호를 받거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집단은 규제완화에 저항하여 규제 완화의 정책의도를 왜곡하거나 규제완화방안의 변경, 나아가 규제완화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규제로 인한 현실왜곡이 쉽사리 눈에 띠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으며 규제의 폐해가 예측하기 곤란한 반면에 규제완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반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표표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업계 스스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시행의 취지를 인식하여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도 복잡하게 얹혀 있는 석유산업의 재반 문제점들이 상표표시제의 시행만으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복잡한 현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하더라도 이를 풀어나가는 길은 자그마한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충분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겠지만 업계의 이해가 상반된다 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자연되거나 방치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또는 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이해관계가 다소간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자를 위하고 전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이윤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참다운 기업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신 간□

1990년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